靑史稿 朝鮮列傳(고종즉위부터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1872년 일본 외무경 副島種臣이 북경에 와서 조약을 체결할 때 총리아문에 "조선은 속국이 아닌가? 그 나라의 통상에 관한 일을 대신하여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선은 비록 속국이기는 하지만 내정과 외교는 그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我朝에서는 간여하였던 일이 없다"고 답변.

1877년 조선이 천주교 일로 프랑스와 분쟁이 발생하자 주부산일본영사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는 가운데 조선이 중국을 '上國'으로 지칭하자 일본이 이를 힐책하여 "交際가 평등인데 어찌 중국만 받드는가? 만일 조선이 중국의 屬國이라면 일본의 國體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고 항의. 조선은 이를 중국에 알림. 총리아문은 일본에 다음과 같이 변론: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에 隸屬되어 있었으나 政令은 그 나라에서 스스로 처리하여 왔다. 그 나라가 중국의 屬邦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며, 또한 그 나라가 自主國이라는 것 역시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일본만이 이를 어찌 홀로 거부하고 있는가?"

1879년 서양 각국과의 수교를 권유: 軍機大臣이 李鴻章에게 보낸 勅諭에서 "일본과 조선은 서로 쌓인 원한이 있어 和好하기가 힘들다. 장차 일본이 그 詐力을 믿고 조선에서 뜻을 펴려 할 때 서양 각국이 일제히 일어나 일본을 뒤에서 견제하려 할 것이니 이는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서양 각국이 조선과 통상하기를 일찍부터 원하였으니 이 통상조약을 기회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여 뜻밖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기회로 삼아 완곡히 開導하여 비오기 전에 창과 문을 막아 외환에 빠짐이 없도록 하라."

서양 국가들과의 수교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1881년 이홍장. 조선은 "軍備가 극히 허술하고 軍糧도 극히 미미하여 자립할 수 없음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리잡고 있는 형세는 실로 東三省의 병풍막이로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이 기회에 성의를 다하여 曉諭하여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나라는 외교와 세계정세에 생소하여, 예컨대 일본과 통상한지 5년이나 되면서 아직 海關을 설치하여 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의 경중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서양과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형세로 보아 반드시 그들에게 속아 손해가 있을지언정 이익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로 인하여 서양에서 교섭을 학습한 道員 馬建忠과 鄭藻如 등에게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동서양의 通例를 참작하여 조선과 서양 각국의 通商章程 草稿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조선국왕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로부터 冊封을 받아왔으니 그들이 일본이나 서양 타국에 답하는 국서에도 마땅히 封號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國政은 비록 그들이 자주적으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中國屬邦의 이름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오군란(1882): 이홍장은 흥선대원군 납치와 억류의 정당성을 주장. "다시 그를 석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奸黨이 서로 선동하고 원한이 서로 얽히어 다시 변란의 싹이 돋아나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신이 삼가 『朝鮮史略』을 조사하여 보니 원대의 고려왕들은 대대로 부자간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갑신정변(1884): "조선의 維新黨이 난을 일으켰다. ... 조선 신민들이 吳長慶에게 난을 평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로 천진조약 체결. 조약의 제3조("조선에서 변란 등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두 나라 혹은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할 필요가 있으면 서로 반드시 공문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사건이 평정되면 즉시 철군하여 다시는 남아 있지 않는다.")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음을 밝히고 있음. 합의에 성공한 후 다음과 같이 자평: "이제 파병시 서로 照會하여 알리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장차 일본이 조선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때 맞추어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서양 한 나라가 조선 땅을 침략하여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 또한 파병을 상의하여 서로 도와 줄 수 있으니 이점은 중국의 작은 나라에 대한 사랑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조선의 대체적인 형세를 보아도 이로움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중국 장군의 議處와 일본 난민에 대한 보상 역시 요구했지만 이홍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영, 불, 독, 러시아에 사신으로 파견된 **劉瑞芬(1886)이 이홍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선은 東三省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중국은 그 나라의 全土를 접수하여 行省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 이것이 上究입니다. 그 다음은 영, 미, 아 여러 나라와 함께 조약을 맺어 서로 보호하며 다른 나라가 한 치의 땅이라도 침략하여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조선 역시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홍장은 이에 찬성했지만 총리아문은 거부.

조선의 서양 각국으로의 사신 파견 문제: 이홍장(1887)이 조선이 각국과 사절을 통하는 규범을 작성하여 상주. 이홍장은 袁世凱에 지시하여 조선이 제3국에 파견하는 공사에 "全權"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함.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사신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지적. 대신 공사가 서양에 도착하면 중국대신에 대해 舊制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이홍장은 이에 세 가지 규범을 제정.
① 韓使가 처음 각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중국대신의 인도로 외무부에 가야 한다.
② 宴會나 교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국대신의 뒤를 따라야 한다.
③ 중요하고 큰일을 교섭할 때에는 먼저 중국대신과 비밀히 상의하여 지시를 받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것은 모두 屬邦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 각국과는 무관하며, 각국은 이를 간여할 수 없다.

간도분쟁: 총리아문의 상소(1890). 길림의 변경 지역에 조선 유민들이 불법적으로 이주하여 개간함.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조선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 이는 조선 정부가 양국의 국경선을 오인한데서 비롯됨. 조선은 豆滿江과 圖們江을 별개의 두 강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이미 시일이 많이 흘렀으므로 조선 유민들의 의사를 물러 조선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이는 그렇게 하게 하고 남고자 하는 이는 중국 국적으로 편입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함.

고종의 모친 조씨가 서거하자(1890) 조선은 사신을 보내 表를 올려 訃告하면서 기근과 환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신의 파견과 중국 사신에 대한 접대가 부담스러움을 호소: "오직 大皇帝의 欽差頒勅은 예로부터 내리는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면 星使가 내방하였을 때 예절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어 죄를 짓는 일이 많지 않을까 두렵게 생각합니다. 장래에 고질병을 안고 있기 보다는 일에 앞서 진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따뜻한 諭示를 반포하

시여 저희들이 삼가 賜奠을 가지고 돌아가 성사가 가는 번거로움을 면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이 응답: "조선 부고사신이 遣使賜奠 일체를 면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니 곤란하고 괴로운 사정은 진정한 것으로서 빈말이 아니다. 그러나 국왕이 대대로 동쪽 번방을 지키며 은혜로운 禮典을 모두 받았다. 弔祭를 위한 사신은 禮典에 실려 있으므로 그대로 행하여야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天朝가 撫恤하여 특별히 내리는 은총이고, 體制와 관계되는 것이니 어찌 가볍게 고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대신 앞으로 중국의 사신은 육로를 통하지 않고 해로로 파견될 것임을 고지. 이어서 "欽使가 그 나라에 도착한 이후 전례를 행함에 있어서 쓸데없이 들이는 비용과 무관한 것은 모두 옛 제도에 따라 각별히 준수되도록 하며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청일전쟁의 발발

동학란이 발발하자 조선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 중국은 천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파병을 통고. "조선이 청병하였으므로 중국은 번속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군대를 파견, 그 난을 대신 평정한다고 통고". 이에 대해 일본은 "귀국이 비록 조선을 번속이라 하고 있으나 조선은 지금까지 스스로 귀국에게 속하였다고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면서 파병.

난이 진압된 후 중국은 양국 군대의 철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 대신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 이에 대해 중국은 "내치를 정돈하는 것은 조선에 맡겨 스스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간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귀국은 이미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어찌 그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

일본의 입장: "조선의 난은 內治를 닦지 못한데 있다. 만약 중국과 일본 양국이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대신 처리하여 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치에 맞지 않게도 모든 것을 방치하여 둔 채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단지 매일같이 우리의 퇴병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진실로 중국에게 있다."

중국의 입장: "조선이 2백여 년간 우리 대청의 藩屛으로 職貢을 다하여 왔음을 中外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최근 10년 동안 그 나라에 내란이 자주 일어나니, 조정에서는 연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내란을 평정하였다. 또한 관원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도성에 주재케 하여 그때 그때마다 형편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였다. 금년 4월 경 조선에서 또다시 토비의 반란이 일어나니 조선 국왕이 군사를 보내 평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일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대를 증가시켜 갑자기 한성에 난입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병사를 1만 명으로 늘려 조선으로 하여금 국정을 개혁하도록 압박하였다. 우리나라는 藩服을 撫綏하면서 그 나라의 내정은 그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정치를 개혁케 할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완강하게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화의를 성립시킬 생각도 없었다. ... 일본이 조약을 지키지도 않고 공법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들 스스로 분쟁을 일으켰음은 공론에서도 명백하다. 이제 특별히 천하에 이를 포고하는 것은 조정이 명백히 이 일을 처리함에 진실로 인을 다하고 의를 다하였지만 형세는 다시 잠시라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모노세키 조약(1895): 제1조에서 “중국은 조선을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가로 인정하고 이전의 조공 등과 같은 전례는 모두 폐지하였다. 대체로 숭덕 2년(1637) 李倧이 귀부한 이래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된 기간은 모두 258년간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독립·자주국이 되었다고 한다.”